

의정부지방법원 2017. 6. 30 선고 2017가단7453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, 건물퇴거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7. 6. 30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,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.
2.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최복규

별지